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5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3. 3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3. 4

다. 상 정 ·의 결 일 자 : 2009. 3. 11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정이유

남해안시대 핵심선도 산업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(안 제3조)

○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6조)

○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리나시설 조성(안 제15조)

○ 요트경기대회 개최(안 제17조)

○ 요트학교의 설치·운영(안 제20조)

○ 요트산업의 재정지원(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87호(2009. 1.29 ~ 2009. 2.17)
- 제출의견 : 없음

나. 관련법령 및 근거

- 수상레저안전법, 항만법, 어촌어항법, 동·서·남해안권발전 특별법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사업인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적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마리나 시설 조성, 요트학교 설치, 요트경기대회 개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제1조(목적)와 제2조(정의)로 구성된 제1장은 총칙부분으로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,
- 제3조(종합계획 수립)부터 제5조(경상남도 계획과 연계)까지 구성된 제2장(종합계획)은 요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"요트산업 육성 종합계획" 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,
- 제6조(설치)부터 제13조(수당 등)까지 구성된 제3장(요트산업자문위원회)은 요트산업 육성 자문기구인 "요트산업자문위원회"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- 제14조(시책 발굴 및 지원)부터 제19조(요트산업관련 단지조성 등)까지 구성된 제4장(요트산업 육성 지원)은 요트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반 조성과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
- 제20조(설치)부터 제23조(위탁운영 및 지원)까지 구성된 제5장(요트학교)은 요트의 대중화와 요트인재 발굴·육성 등을 위한 요트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
- 제24조(보조금 등의 지원)부터 제25조(부담금 등의 감면)까지 구성된 제6장(재정지원)은 요트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
- 그 외 제26조(보조금 등의 지원방법)부터 제28조(시행규칙)까지 구성된 제7장(보칙)은 "보칙" 부분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과 사후관리,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2008. 6. 28 「동·서·남해안권발전 특별법」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개발이 본격화 되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육상레저에서 해양레저로 패러타임이 바뀌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, 레저의 핵심인 요트산업의 선점을 위한 발 빠른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적절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신설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

○ 문 : 요트산업이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우리군민에게 이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지요 ?

◉ 답 : 현재로는 주민들에게 큰 이익 등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3만불 시대에는 필요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대한 선점이 필요한 산업입니다.

○ 문 : 계류시설 등의 기반시설 이용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지요?
그리고 창녕 화왕산 사건과 같은 재해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.(익사사고 등)

◉ 답 : 예, 조례제정 이후에 시설을 구비하고서 요금 징구 등의 규칙을 제정할 것이며 사업관련 용역시에 안전시설과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○ 문 : 요트산업은 수익상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(일본 등)이므로 기반시설 조성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선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.

◉ 답 : 예, 사업시행에 참고하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09. 3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